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손 자 용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1년 5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5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2011년 3월 25일자 조직개편사항 반영과 위임사무 삭제 및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위임사무 조정(삭제) : 2건
 -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발행교부 및 몰수 마약류의 폐기·처분 등
 - ※ 법제처 법률해석 결과 도 고유사무가 아닌 기관위임 사무로 판명되어 위임조례에서 삭제하고 중앙부처 승인을 받아 위임규칙에 반영 재위임
- 위임범위 조정 : 1건(지방도 가로수의 관리)
 - 당초 : 군지역 또는 시의 읍·면지역 일반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의 관리
 - 개정 : 군지역 또는 시의 읍·면지역 일반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의 조성·관리

-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: 1건
 -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수리와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: 균형개발과 → 도로과
- 관계법령 정비 : 3건
 - 도세 징수유예, 도세 기한의 연장, 도세 결손처분

4. 검토의견

이번에 개정하는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

- 별표 중 식품의약품안전과 사무 중 일련번호 7의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발행교부와 일련번호 15의 몰수 마약류의 폐기·처분 등의 업무가 법제처 법률해석결과 기관위임사무로 판명되어 위임조례에서 삭제하고,
- 별표 중 산림녹지과의 일련번호 8 중 “일반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의 관리”를 “일반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의 조성·관리”로 위임범위를 조정하며,
- 별표 중 균형개발과 일련번호 17의 사무를 조직개편안에 따라 도로과로 이관하고,
- 별표 중 세정과의 근거법령 중 “지방세법 제41조, 동법 제26조

의 2, 동법 제30조의 2”를 각각 “지방세기본법 제80조, 같은법 제26조, 같은법 제96조”로 각각 변경하는 것임.

금번 조례안은 위임사무의 조정, 위임범위 조정, 업무이관, 근거법령 개정 등을 법률해석과 근거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 임 :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